

'99년도중요재산취득(을숙도구민휴식공간설치부지)승인의건

의안 번호	44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1999. 8. 27

제 출 자 : 사하구청장

1. 제안이유

구유재산으로 '99년도에 취득할 사유가 발생한 중요재산의 취득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법제3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사하구 의회의 의결을 받아 아래 토지를 취득하여 목적사업을 차질없이 집행하고자 함

2. 주요골자

사 업 명	취득 구분	토 지						비고
		소재지	지 목	필지	면 적 (㎡)	추정가액 (천원)	소 유 자	
계				2	18,025	1,717,469		
을숙도 구민휴식 공간 설치	신규	하단동 1149-1번지	잡종지	1	7,819	706,055	한국수자원 공사	일반 회계
로올러스케이트 경기장 설치	"	하단동 1149-2번지	"	1	10,206	1,011,414	"	"

※ 추정가액은 공시지가를 기준한 금액임

3. 관계법령

-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

'99년도 중요재산 취득계획 총괄표

사 업 명	취득시기	토 지						비 고
		소 재 지	지 목	필지	면적 (㎡)	추정가액 (천원)	소유자	
계				2	18,025	1,717,469		
을숙도 구민휴식 공간 설치	'99. 4/4분기	하단동 1149-1번지	잡종지	1	7,819	706,055	한국수자원 공사	일반회계
로울러스케이트 경기장 설치	"	하단동 1149-2번지	"	1	10,206	1,011,414	"	"

※ 추정가액은 공시지가를 기준한 금액임

'99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

사업명	취득구분	재산의 토지			추정가액 (천원)	취득시기	취득사유	취득재산 소유자 주소·성명	비고
		소재지	지목	면적 (㎡)					
계		2필지		18,025	1,717,469				
을숙도 구민휴식공간 설치	신규	하단동 1149-1번지	잡종지	7,819	706,055	'99. 4/4분기	구민휴식공간 조성	사하구 일반회계	
로울러스케이프 경기장 설치	"	하단동 1149-2번지	"	10,206	1,011,414	"	로울러경기장 조성	"	

※ 추정가액은 공시지가를 기준한 금액임

을숙도 구민휴식공간 설치용지 등 취득

1. 취득사유

- 을숙도상단부 문화재지정 해제구역내에 구민휴식공간 설치용지를 매입하여 2000년 전국체전(제81회) 부산개최에 대비한 로울러스케이이트 경기장을 설치하여 동 경기를 유치하고 지역내 부족한 구민의 문화휴식공간등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구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는데 있음

2. 취득재산의 내역

사 업 명	토 지						주 관 서
	소재지	지 목	면 적 (㎡)	추정가액 (천원)	취득시기	소유자	
계	2필지		18,025	1,717,469			
을숙도 구민휴식공간 설치	하단동 1149-1번지	잡종지	7,819	706,055	'99. 4/4분기	한국수자원 공사	총무과
로울러스케이이트 경기장 설치	하단동 1149-2번지	"	10,206	1,011,414	"	"	"

※ 추정가액은 공시지가를 기준한 금액임

3. 사업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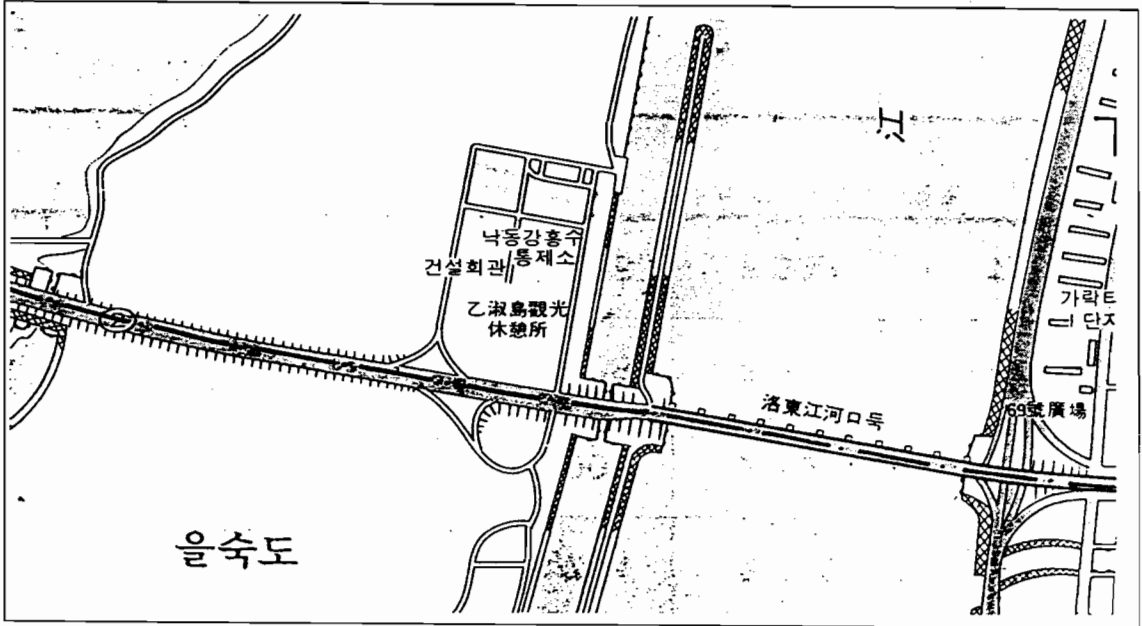
- 하단동 1149-1번지 ▷ 노천극장 및 야외공연장 설치
 - 주요시설 : 노천극장(자동차야외극장), 야외공연장, 놀이시설
 - 사업추진 : 민자유치
- 하단동 1149-2번지 ▷ 로울러스케이이트 경기장 설치
 - 주요시설 : 주경기장, 보조경기장, 본부석등
 - 사 업 비 : 시설비 10억원
 - 사업추진
 - 국제공인 규격으로 설치
 - 시설비는 전국체전 시설지원금(국비)으로 확보
 - 전국체전후 민간위탁 운영(區 경영수익사업)

4. 관련법규

- 지방자치법제35조제1항제6호
- 지방재정법제77조 및 동법시행령제84조
- 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제7조

5. 위치도 및 현황도 : 별첨

〈 위치도 〉



〈 현황도 〉

